

고충민원이란?



세무부서장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,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·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

고충민원의 신청 및 처리



신청기간

- **원칙**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
- **예외**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 만료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,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성격은 소멸시효기간(5년) 경과 90일 전까지

처리기간

- 접수한 날부터 14일(초일 산입, 공휴일·토요일은 불산입)
- 1회 연장 가능, 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초과 불가

권리보호요청이란?



세무부서장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, 세원관리 및 체납처분 등의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가 관할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하는 행위

신청기간

-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 이전까지

처리기간

- **원칙** 7일 이내 처리(초일은 산입, 공휴일·토요일은 불산입)
- **예외** 14일(사실 확인·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·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)

지방세 고충 해결사 지방세 납세자보호관



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이용법

납세자 민원 신청 > 납세자보호관 > 검토조치

전화번호 각 지역별 000-0000

지방세 고충 해결사

지방세 납세자 보호관

지방세로 발생한 고충,
납세자보호관을 통해 해결하세요!



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란?

납세자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전담하여
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
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입니다.



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의 권한

- 1 위법·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일시중지 요구권
- 2 위법·부당한 세무조사의 중지 요구권
- 3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 요구권
- 4 과세자료 열람·제출 요구 및 질문·조사권



납세자보호관과 함께 지방세 고민 끝!!

